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崔光默

#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95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 3. 주요내용

**【국공립 문래동 제2어린이집 신축】**

어린이집이 부족한 문래동5가 인근에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차수요가 적은 인근 노외주차장을 일부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 국공립 문래동 제2어린이집 신축(지상2층)

○ 1층 : 원장실, 보육실, 주방

2층 : 보육실, 교사휴게실, 교재교구실, 옥상 놀이터

| 재 산 표 시 | | | | 추정가액 (천원)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토지소유자 |
|---|---|---|---|---|---|---|---|
| 지목 | 소 재 지 | 토지면적 | 건물면적 | | | | |
| 건물 (어린이집) | 문래동5가 3 | - | 453㎡ | 1,657,000 | 2018.12. | 국공립 문래동 제2어린이집 신축 | 영등포구 |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 문래동 5가 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453㎡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2017. 9월 문래동5가 3번지 공용주차장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17.9.2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 동년 10.13.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 결정 통보를 받아, 도시계획 변경없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무상이관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안으로, 2017.11.2.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2018.3월에 착공하여 2018.12월말에 준공 예정인 사업임.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16억 5,700만원으로서, 시비 14억 800만원, 구비 2억 4,9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설계 및 감리용역비 9,784만원, 공사비 14억 5,916만원, 시설부대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문래동 5가 지역 주민의 보육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차수요가 적은 노외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고자 회계간 무상이관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서,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